

[서식 예] 임금청구의 소(직상건설업자의 연대책임)

소 장

원 고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○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1.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○)
전화・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2. ◇◇건설 주식회사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○)
대표이사 ◈◈◈
전화・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임금 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. ○○. ○○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3.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

청 구 원 인

- 1. 원고는 2017. ○○. ○○.부터 2017. ○○. ○○.까지 피고 ○○○에게 고용되어 노무 를 제공하다 퇴사하였습니다.
- 2. 그런데, 피고 ○○○은 원고에게 임금 ○○○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. 자세한 근로내역은 체불임금등·사업주 확인서 기재와 같습니다(갑 제1호증 체불 임금등·사업주 확인서).
- 3. 그리고 피고 ○○○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항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며, 피고 ○○○ 주식회사는 하수급인인 피고 ○○○의 직상 건설업자로서 피고 ○○○과 연대하여 동인이 사용한 원고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할 것입니다(근로기 준법 제44조의2).
- 4.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체불임금 ○○○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의 다음날인 2017. ○○. ○○.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

체불임금등·사업주확인서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법인) 1통

1. 소장부본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



관 할 법 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3년(☞소멸시효일람표) (근로기준법 제49조)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비 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
불복절차 및 기 간	· 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·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


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(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,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: 민법 제467조 제1항, 제2항)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